

2023. 11. 30.(목) 10:00
제3차 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
진흥에 관한 조례안
제안 설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홍지광 위원)

【 부의 안건 제안설명 】

▶ 안녕하세요?

홍지광 위원입니다.

▶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

▶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▶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▶ 본 조례안은

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 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.

▶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,
-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
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생활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,

-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
 -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에 관한 사항과
 -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,
 - 안 제15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,
 - ▶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 - ▶ 감사합니다.